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 장애인에 대한 보호 · 감독 의무와 방임 -

| 일시 | 2022.12.8. (목) 14:00

| 장소 |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와 방임

일 시 : 2022. 12. 08. (목) 14:00

장 소 :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지하1층 컨벤션 II

 **YouTube** 생중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채널)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2년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인 사 말

박현희 관장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축 사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3
정기열 회장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5
은종균 관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7

발 제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한 쟁점
- 장범식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11

토 론

「장애인 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한 쟁점」에 관한 토론문
-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7
「장애인 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한 쟁점」에 관한 토론
-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31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보는 방임 사례
-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35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 김민재 (프리웰지원주택센터 팀장) 39

활동보고

2022년 경기북부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49
2022년 상담 현황 보고서 67

일 정 표

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13:30	14:00	○ 등록 및 접수
14:00	14:20	○ 개회식 ○ 인사말
1부.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와 방임		
14:20	14:40	○ 발제.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한 쟁점 - 장범식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14:40	16:00	○ 토론1. 「장애인 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한 쟁점」에 관한 토론문 -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2. 「장애인 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한 쟁점」에 관한 토론 -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 토론3.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보는 방임 사례 - 김지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토론4.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 김민재 (프리월지원주택센터 팀장)
16:00	16:10	○ 휴식시간
2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보고		
16:10	16:30	○ 보고1. 2022년 경기북부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 발표자 : 백주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정책팀장) ○ 보고2. 2022년 상담 현황 보고서 - 발표자 : 김홍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리옹호팀)
16:30	-	○ 폐회

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현희입니다.

2022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인권포럼 주제는 2022년 한해동안 권익옹호기관 직원들이 가장 많이 고민했고 이후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와 방임”입니다.

사회의 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나는 학대 행위자들은 여전히 “내가 먹여주고 재워줬다”라고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단순히 장애인을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으로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는 어디까지 인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는 어디까지 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노인학대, 아동학대 지원기관들과 함께 발맞춰 가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장애인 관점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노인학대, 아동학대 지원기관들과 달리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방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상황이다 보니 적극적 행위가 아닌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방임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인사말

토론회를 준비과정에서 학대관정을 할 때 만큼의 고통과 좌절감이 저를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다고 좌절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저희이기에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훌륭한 토론자분들이 채워주실 것이라 믿고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대구대학교 이동석교수님,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교수님,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지순관장님, 프리웰지원주택센터 김민재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나누어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동안 온몸과 온 마음으로 피해자지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장

박현희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최 종 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와 방임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2년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장애인이 학대받지 않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아직도 학대받고 차별당하는 장애인이 많은게 현실이기에 나온 말 일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실생활에서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고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열리는 “2022년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상담 실적과 실태 조사 등 생생한 자료 등을 태도로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축 사

오늘 포럼을 준비하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기관으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보장

정기열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안녕하세요.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정기열입니다.

먼저 장애인 인권을 위해 경기 북부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박현희 기관장과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분들에게 장애인 당사자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장애인 시민과 비장애 시민들로 양분해 비문명적 시위라는 낙인으로 시위의 목적인 장애인 이동의 권리가 가려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탈시설 권리 또한 그렇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의 탈시설 정책은 장애 당사자의 권리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을 나 스스로 결정한다는 아주 당연한 권리이지만, 대한민국 장애인들에게는 찾기 힘든 권리입니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제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주거 권리 향상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2022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예산이 5천 6백억 원에 달하는 것에 반해 지역사회 자립전환 예산은 고작 24억에 불과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 여전히 시설 입소를 위해 대기 중인 장애인들이 경기도는 1,800명이 넘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 중 본인 스스로 시설에 들어오기를 결정한 장애인은 13.9%에 불과하고, 강제적 또는 주변의 강력한 권유 등 비자발적 입소가 82.9%라는 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비자발적 입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축 사

얼마 전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탈시설 관련해선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지속적 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 서비스 지원의 제공에 대한 예산과 다른 조치에 대한 노력 부족” 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활동 보고를 보면 가족으로부터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부터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과 학대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피해 사례들은 권익옹호기관의 상담과 응급 조치, 피해자 회복 지원 등의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폐쇄적 환경인 거주시설에서의 학대 피해 사례들은 실제 일어나는 학대 피해의 일부일 겁니다.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행 기준에 대한 합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탈시설 지원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정책과 함께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을 만들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돌봄과 부양의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합니다.

장애인이 더 이상 학대받지 않고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2023년에도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들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입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2년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포럼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현희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적극적인 대응뿐 아니라 정책적 현안을 이슈화로 이끌어 내어 장애인의 삶과 권리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발표되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도 첨단화, 무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편리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 장애인학대 사례에 있어 방임의 문제는 판단에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국의 모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심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늘 이처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국적 이슈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럼은 개최 자체만으로도 기대를 갖게 하고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올해 발표된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학대 신고 및 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학대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18년과 비교하면 전체 학대신고건수는 35.5% 증가하였으며, 학대판정건수는 26.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관심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지고, 무엇보다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사명감을 갖고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동료들이 있어 가능했을 것입니다.

축 사

여전히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조사는 물론 응급조치(쉼터 부족 등), 피해자 지원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선8기 경기도와 의회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그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예산 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럼 준비를 위해 애쓰신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 제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한 쟁점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장법식]

I. 들어가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3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임의 경우 신체적 학대나 경제적 착취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극적인 행위가 주된 내용이고 그 행위의 유형도 다양하여 판단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그동안 아동과 노인에 대한 방임의 판단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방임은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학대는 주로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여부에 주된 관심이 있었고, 방임에 대해서는 장애인학대로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방임은 다른 장애인학대와 달리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자로 주체가 한정된다. 단순한 동거인과 같이 그 주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고, 보호·감독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며, 보호·감독의무의 주체의 사정(장애여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방임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장애인은 장애의 유형이 다양하고 보호가 필요한 상황도 달라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방임에 해당할 수도 있고, 방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방임의 판단을 위해서는 의식주를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장애의 유형과 보호·감독의무의 주체와 내용을 기초로 방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방임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II. 방입 관련 통계

1.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입 사건¹⁾

2019년 장애인학대사례는 945건으로 전년도 대비 6.4% 증가하였고, 2020년 장애인학대사례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가 증가하였으며, 2021년 장애인학대사례는 1,124건으로 전년도 대비 11.5%가 증가하였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입 사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30건(14.6%), 2019년 60건(6.3%), 2020년 47건(4.7%), 2021년 65건(5.8%)으로 방입사례가 다른 해와 큰 차이를 보이는 2018년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장애인학대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감소하거나 그 수가 유지되고 있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입 사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29건(18.6%), 2019년 128건(10.2%), 2020년 120건(9.5%), 2021년 114건(8.1%)으로 2018년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건수를 보이고 있으나 매년 전체 장애인학대사례가 증가하여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2. 연도별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입 사건²⁾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아동학대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방입은 2018년 2,604건(10.6%), 2019년 2,885건(9.6%), 2020년 2,737건(8.9%), 2021년 2,793건(7.4%)으로 매년 비슷한 건수였으나 전체 아동학대사례가 증가하여 비율은 매년 감소하였다.

중복학대 중 방입을 포함한 경우를 더하여 살펴보면³⁾, 방입은 2018년 4,336건(17.6%), 2019년 5,318건(17.7%), 2020년 5,172건(16.7%), 2021년 4,929건(13.1%)으로 발생 건수는 비슷하나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⁴⁾

3. 연도별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입 사건⁵⁾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입과 자기방입⁶⁾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방입은 2018년 248건(4.8%), 2019년 208건(4.0%), 2020년 230건(3.7%), 2021년 244건(3.6%), 자기방입은 2018년 95건(1.8%), 2019년 101건(1.9%), 2020년 92건(1.5%), 2021년 85건(1.3%)이 발생하였다. 매년 발생 건수는 비슷하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2022, 226~227면 참조.

2)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22, 55면 참조.

3)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는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통계를 작성하지 않았다.

4) 각 연도별 통계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2022, 33면 참조.

6) 노인학대는 장애인학대와 달리 학대유형으로 방입과 자기방입을 구분한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18건(8.8%), 2019년 741건(9.0%), 2020년 760건(7.8%), 2021년 691건(6.5%), 자기방임은 2018년 240건(2.9%), 2019년 200건(2.4%), 2020년 223건(2.3%), 2021년 204건(1.9%)으로 매년 비슷한 건수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율은 감소하였다.

Ⅲ.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임 관련 사례

1. 방임 관련 판결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3. 23. 선고 2017고단1273 판결⁷⁾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상한 냉동만두를 삶거나, 곰팡이가 핀 쫄면의 곰팡이 부분만 가위로 잘라내고 이를 조리하거나, 먹다 남은 콩국수 국물을 버리지 않고 대형 음식물 통에 모아두었다가 그 국물에 콩국수 면을 담거나, 계란 등 내용물이 부패하였음에도 조리사로 하여금 이를 조리하거나, 곰팡이가 핀 일회용 그릇에 강냉이를 담아 거주 장애인들에게 식사로 제공하는 등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단1829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지적장애 3급 피해자(여, 58세)를 종업원으로 사용하던 사용자가 4~5년간 피해자를 난방시설이 없는 방에서 지내게 하고 2~3개월 동안 식당에서 식당의자를 붙여 잠을 자게 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886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5년간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51세)를 고용하여 공장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를 숙식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관절운동장애 등으로 노동이 절대 힘든 장기적 정형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 무균괴사 및 관절염’ 등이 발생하게 하여 운동장애 및 동통으로 노동은 절대 힘든 상태가 되게 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7) 위 가 내지 다. 판결은 차성안, “장애인학대범죄의 형사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2021년, 231~232면 참조.

라.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고합589 판결⁸⁾

의정부지방법원은 “장애인 및 아동보호시설에서 18:50경부터 다음날 08:18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야간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해당 시설장에게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인정하여 장애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을, 성인 장애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위반을 각 인정하였다.

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1. 8. 선고 2022고단1261 판결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인은 평소 A가 피고인의 지시에 잘 따르는 반면,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라고 하든지 피고인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 지시를 잘 따르는 A로 하여금 피해자 B를 다른 곳으로 보내어 보호하지 않고 방임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경 A와 함께 고양시 0000000에 위치한 00원룸으로 피해자 B를 데리고 가 그곳에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B로 하여금 혼자 살게 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방문하여 밥을 해주거나 2만 원 정도의 금원을 주며 생활할 것을 지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12.경까지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시하여 방임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다른 피해자(위 피해자의 여동생)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에게 방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판결문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동거인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다.

2. 방임 관련 기관 사례

가. A 장애인 거주시설

신고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부실로 인한 이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결과	- 종사자 이용인에 대한 반말 사용 - 시설 악취와 계절에 맞는 냉방시설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함 - 이용인 옷 및 청결 상태 불량 - 푸드뱅크를 통한 식사지원 - 이용인에 필요한 보조기구 미제공 - 기저귀 교체, 식사지원 등 이용인이 다른 이용인을 지원함 - 이용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외부 활동 미제공 -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기준 위반 및 서비스 최저기준 위반
판정결과	- 방임 - 정서적학대 - 경제적착취(노동력착취 포함)
지원내용	-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8) 본 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이다. 방임행위와 장애아동에 대한 폭행행위의 경합범이 인정된 사례로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이 인정되었다.

9) 본 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이다. 피고인에게 사기,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장애인복지법위반, 강요죄로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나. B 장애인 거주시설

신고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야간 근무자 부재
조사결과	- 이용인 생활실 근무표상 야간 근무자가 존재하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이용인의 위생지원 및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에 위험
판정결과	- 방입
지원내용	- 야간 근무자 부재에 대한 시정조치 - 근무표 및 실제 종사자 근무여부, 현황 등 확인 요청 - 야간 등 취약시간대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 대책 마련 필요
지원결과	- 행정지도

다. C 요양원

신고내용	- 당사자는 요양원을 이용하던 지적, 지체 장애인이었는데 낙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3일간 병원 진료 없이 방치되었다가 우측하지골절 진단을 받음 - 이후 당사자는 낙상으로 발생한 우측하지골절의 합병증으로 사망함 - 과거 당사자가 낙상하여 얼굴에 멍이 크게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른 이용인들이 당사자의 멍을 보면 놀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시설장에 의해 열흘 간 감금을 당한 적도 있음
조사결과	- 당사자는 사망하여 면담 진행 불가함. - 관련 서류(간호일지, 진단서 등) 확인 및 종사자 면담 결과,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6일 뒤에 병원 진료를 본 것으로 확인됨. - 요양원 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용인의 낙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병원 진료 등)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진료를 보지 않음 - 진단서 상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확인되어 낙상사고로 발생한 우측하지골절의 합병증이 직접 사망 원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불가능
판정결과	- 방입
지원내용	- 시설조사 결과보고서 관할 지자체 발송 및 행정처분 요청
지원결과	- 관할 지역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 신고 접수 되어 조사 진행 - 관할 지역 경찰서 확인 결과 검찰 송치 예정이라는 점 확인함

라. D 거주시설

신고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식당에서 이용인의 도전행동을 말리는 과정 중, 이용인을 때리고 끌고 나와 출입구 현관문을 닫고 방치하는 모습을 CCTV에서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신고 접수.
조사결과	- CCTV 영상 확인 결과, 행위자가 이용인의 도전행동을 막는 과정에서, 이용인의 등을 한차례 치는 모습과 팔을 잡아끌며 이용인의 행동을 막는 모습이 확인 - 또한, 약 3분 동안 이용인을 현관 출입구의 신발장으로 이동시킨 후, 현관 출입문을 잠금 조치하여 시설 내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조치 확인 - 행위자는 이용인의 폭력성이 있는 도전행동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하였지만, 현관 출입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도록 조치한 것은 인정 - 피해자는 백내장 진단으로 시력이 안 좋고, 턱이 탈골되어 음식 섭취가 힘든 상태로 확인
판정결과	- 방임
지원내용	- 행위자 내부 징계 조치 요청 - 종사자 인권교육 요청
지원결과	- 행위자 징계처리 (감봉 2개월) - 행정청 추후 지도점검 간 인권침해 관련 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법정 의무교육 외 추가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마.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치료사 E

신고내용	-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 아동이 착석을 힘들어하자 의자를 뒤에서 막고 있었고, 아동이 의자에 올라가려 하자 아동을 강하게 잡아 내려오게 하였으며, 아동이 착석했음에도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노트북을 사용함
조사결과	[CCTV 확인 결과] - 아동이 밟고 올라가려 했던 의자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음. - 아동이 착석한 이후 노트북 사용 시간은 약 15분임.(치료 시간 40분, 보호자 면담 10분으로 총 50분으로 진행된다고 함) - 이후 클레이를 이용한 활동을 진행하였음. 치료 도중에도 행위의심자가 잠깐씩 노트북을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됨. [행위자 면담] - 치료 대상자가 착석을 해야 미술치료를 진행할 수 있음. 전부터 아동은 착석에 어려움을 보였기 때문에 착석을 유도하고 중재하는 활동을 많이 하였음. - 사건 당일 미술치료사의 물리적 중재(아동을 잡고 의자에서 내려오게 하는 행위)는 안전을 목적으로 하였고 감정이 실린 행동이 아니었음. - 노트북으로는 키워드를 작성함. 업무량이 많아 일지를 몰아서 작성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치료 상황의 키워드를 적어 놓고 치료가 끝나면 사무실에서 일지 작성하고 있음. 당일 아동은 평상시보다 특이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써놓아야 할 부분이 많았음.
판정결과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지원내용	-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 시설에는 근무환경 개선 요청, 신고의무자 규정 준수 요청

IV.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임과 관련한 쟁점

1. 방임의 주체에 대한 쟁점

방임의 주체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가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2호가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은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 등록의 주체를 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의 의무는 계약이나 법률 혹은 조리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은 법률에 의한 법정대리인으로, 복지시설의 종사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은 계약에 의한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 외에 동거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또는 가족·친척은 항상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은 방임을 장애인 학대의 유형이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보호자의 정의 규정을 됨으로 인해 장애인을 보호·감독의 객체로 보게 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2. 방임의 내용에 대한 쟁점

장애인에 대한 보호·감독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연령에 따라서도 내용이 다르게 된다.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서로 중첩되어 적용될 수 없는 반면 장애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 또는 노인복지법과 중첩되어 적용될 수 있다. 미성년인 장애인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방임에 해당할 수 있고, 노인인 장애인에 대한 방임은 장애인학대와 노인학대의 방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방임은 복합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성인인 장애인에 대하여 부모가 어디까지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② 장애가 있거나 경제상황이 열악하다는 등의 보호·감독 의무자에게 있는 사정을 방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얼마나 고려하여야 하는지, ③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는 어떠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었어야 하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그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법령상의 요건 중 어떠한 내용을 어느 정도

로 갖추지 못하였을 때 방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장애인아동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장애인이 거주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장애인거주시설이 요구하는 요건을 어디까지 준수하도록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장애인학대에 대하여 2021. 11.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 「장애인학대 관련 지표 개발연구」는 방임 판정기준으로 6-1부터 6-4까지 4가지를 제시하였다.¹⁰⁾

〈표 IV-4-7〉 방임 판정기준

구분	방임 판정기준
6-1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기본적인 의식주, 신변관리 지원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6-2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의료적 지원을 소홀히 하는 행위
6-3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에게 교육 등 기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6-4	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는 행위(자기방임)

위 판정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의식주, 신변관리 지원, 의료적 지원, 교육 등 기본적 사회서비스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방임은 보호·감독의무의 내용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고, 각 유형에 대한 판정기준이 필요할 것이지만 아직 자세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지는 못하였다.

기관의 사례 중 방임으로 판정한 경우는 대부분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된 사례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판단할 수 있다. 방임의 판정기준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과 같이 여러 부분으로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 연구는 판정기준에 따라 방임의 대표행위로 15개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¹¹⁾.

10)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인학대 관련 지표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2021, 132~133면 참조

11)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위 연구, 148~149면 참조

〈표 IV-4-13〉 방임 대표행위

판정기준	방임 대표행위
(6-1)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기본적인 의식주, 신변관리 지원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①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부적절한 음식을 주는 행위 ②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에게 건강이나 안전의 유지에 부적절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행위 ③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건강이나 안전의 유지에 부적절한 의복을 제공하는 행위 ④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에게 위생, 신변관리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제공하는 행위 ⑤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제공하는 행위 ⑥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위의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6-2)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의료적 지원을 소홀히 하는 행위	①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제공하는 행위 ②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③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위의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6-3)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에게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제공하는 행위 ② 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위의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6-4) 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는 행위(자기 방임)	①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를 포기하는 행위 ② 돌봄 등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는 행위 ③ 치료 등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장애인이 의료적 조치를 거부하는 행위

하지만 위와 같은 15개의 사례로 방임을 판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장애인에 대한 방임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 및 연령 등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다양한데 위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체적인 사례를 기존의 판정례로 검토하기에는 아직 사례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고 학대판정과 법원의 판결도 부족하다.

앞서 본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589 판결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에 야간근무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방임으로 판정하고 고발과 기소, 최종 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이다. 야간근무자와 관련한 논의는 특정 성별의 야간근무자만 있는 경우, 건물 전체에 1명의 야간근무자가 있는 경우를 방임으로 볼 수 있을지로 확장하고 있다. 이렇듯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방임의 판단은 변화될 수 있다.

보호·감독의무의 부실과 방임 사이의 경계에 있는 사례의 경우 기존 사례나 적용례가 없는 논의로 의견이 일치되기 어렵고, 결국 방임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연구된 방임의 판단기준과 대표사례가 좀 더 촘촘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3. 형사처벌과 관련한 쟁점

가. 형법상 학대죄는 그 구성요건인 범죄 주체가 보호의무자로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학대에 그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학대의 수준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적어도 유기의 수준에 달하여야 하므로 학대로 인정되기 어렵다¹²⁾.

1997년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신설되어 2015. 12. 23. 시행되기 전까지 약 19년간 형법상의 학대죄가 장애인에게 적용된 사례는 하급심 판례를 기준으로 총 22건으로 이는 1년간 1건이 조금 넘는 숫자로서 형법상 학대죄가 생각보다 활발히 장애인 학대행위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고일을 기준으로 보면, 1998년 1건, 2006년 1건, 2008년 3건, 2009년 1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2012년 1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1건, 2016년 5건, 2018년 3건이다.¹³⁾ 위와 같이 기존의 형법 규정만으로는 사실상 장애인학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나. 형법상 학대죄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제59조의9)와 벌칙규정(제86조)을 통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다. 장애인학대의 문제를 별도의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특별법의 과잉이라는 비판, 기존과 다른 새로운 법익 침해에 대한 설명이 없이 중복된 형사처벌규정을 두었다는 비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복지의 관점에서만 보아야 하는데 형사처벌에 대한 관점이 섞여 판단이 어렵게 하였다는 비판이 있다¹⁴⁾.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학대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둔 것은 그동안 이를 방치하고 처벌하지 않았던 반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판정을 하면서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고발 여부도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학대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학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제59조의9)와 ‘범죄’가 아닌 장애인학대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법률의 규정만으로 구별하기는 불가능하다.

장애인학대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규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사건을 구분할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형법상의 학대죄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안 중 “단란주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36세, 여)를 소개받아 2015. 11. 15.경 부터 2017. 1. 2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 주점 손님들의 접대부로 일을 하도록 시키면서 피해자가 식사를 많이 할 경우 안주를 많이 먹지 못하여 매상을 올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하루에 식사를 한 번만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하여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고합32 판결 참조). 차성안, 위 논문, 202면 참조.

13) 차성안, 위 논문, 196면 참조.

14) 학대자 처벌에 대한 형사정책상의 비판으로 정지훈, “학대자 처벌의 윤곽과 방향”,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2022년 참조.

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장애인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임의 경우 단독으로 고소·고발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위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589 판결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폭행행위가 있어 방임도 같이 고발하였던 건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불송치·불기소처분 등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방임행위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다른 범죄로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부분은 송치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수사기관도 장애인학대에 대한 더 넓은 이해로 법을 적용하여 장애인학대범죄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방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마. 방임에 대한 고소·고발이 어려운 이유에는 위와 같이 ①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례로 판단할 판단기준이 부족한 점과 ② 수사기관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점 외에도 ③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여 보호·감독 의무자와의 분리가 쉽지 않고, 분리조치가 피해장애인 보호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신중하여야 하는 점도 있다.

피해장애인에 대한 방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한편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책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다.

4. 방임 사례에 대한 연구 부족

장애인학대 사건은 우선적으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와 같이 구체적인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를 위주로 사회의 관심과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방임은 다른 조사에 부수적이거나 보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어찌보면 장애인에 대한 의식주, 신변관리 지원 부족, 의료적 지원 부족, 기본적 사회서비스의 제공 부족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고, 장애인의 생존 문제(의식주의 존재)가 우선시 되어서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까지 나아가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고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이 명백히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인격 존중, 사회통합,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어려웠다. 장애인학대를 판정하고 기록하여 통계를 작성할 구체적인 기관도 없었다.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게 되면서 신고접수된 사례에 대한 장애인학대 여부 판단과 그 통계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된지 5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사례의 수집과 연구가 부족했던 방임에 대해서도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접수된 사례에 대한 방임 여부를 판정하고 그 판정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이 받아야 할 보호·감독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고민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학대의 판단기준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방임에 대한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V. 마치며

올해 기관에서 진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조사 중 눈이 불편한 고령의 이용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해당 시설에 사용할 안경을 달라고 했다가 해당 이용인은 글을 몰라 안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다. 해당 이용인은 조사를 위해 제시한 사진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나빴다. 시설에서 이용인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다.

장애인거주시설에 고령의 이용인을 위한 돋보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시설조사를 계획하면서 생각한 내용은 아니었다. 이용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하였더라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다.

방임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사례에서 이미 구체적인 피해가 나타난 장애인학대에 가려 방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호·관리 의무의 주체를 분명하게 할 필요는 있다. 보호·관리 의무의 모든 주체를 열거하기 어렵더라도 일부를 열거하고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여 포섭하는 방식 등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방임을 포함한 장애인학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한 2021년 「장애인학대 관련 지표 개발연구」로 방임의 판정기준과 대표사례를 정하였다. 이렇게 정해진 판정기준과 대표사례는 구체적인 사례에 계속 적용해야 하고, 판정례와 법원의 판례 등으로 그 내용이 보충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 규정되지 않은 정서적 방임과 같이 기존에 판단하지 않았던 방임도 그 내용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의 유형,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방임 판정기준과 대표사례는 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부분은 적다.

장애인학대로 판정한 경우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도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학대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학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법령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다른 범죄로 수사과 기소가 이루어지는 등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수사기관의 인식도 변화하여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서 방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더라도 적극적으로 방임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계속 설득하여야 한다.

장애인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해서는 논문, 토론 자료를 찾기 어려웠고, 판결도 소수만을 찾을 수 있었다. 장애인학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방임에 대한 자료와 판정례, 판결례는 부족한 상황이다. 아직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더 보이지 않았을 장애인학대의 유형 중 방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사례수집, 장애유형과 여러 고려요소를 포함한 판정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 학대유형 중 방임에 대한 쟁점」에 관한 토론문

이 등 석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 학대유형 중 방임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자의 발제문에 대부분 공감하고, 많은 공부가 되었음
- 발제문의 순서에 따라 토론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함

I.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함

- 다섯 가지 학대유형 중 방임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즉 부작위에 의해 발생하는 유일한 유형이라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정의하기 어려움이 있음
- 방임의 경우 학대 행위자가 보호 및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로 제한되는데, 보호 및 감독의 의무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기준 수립이 필요함
- 방임의 경우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제한됨. 이에 따라 기본적 보호 및 치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수립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발제자가 “의식주를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장애의 유형과 보호·감독의무의 주체와 내용을 기초로 방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며, 방임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함

II. 방임 관련 통계의 문제점

- 발제자도 언급하였듯이, 연도별 장애인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방임 건수는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임이 학대 중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
- 그렇다면 정말 방임은 줄어드는 것일까?
- 우리나라의 경우 방임 정의를 앞서 살펴보았듯이 너무 제한적으로 살펴보고 있음. 이는 장애인학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노인학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 보호 및 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방임을 신체적으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또 신체, 사회, 건강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불충분한 영양공급, 부적절한 난방 시스템, 의약품의 부족, 의료보장·사회보장·교육 서비스의 결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DH, 2000).
- 즉 신체적 욕구 또는 필요성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욕구 또는 필요성에 대해 방치하는 것도 방임으로 여기고 있음

Ⅲ. 사례를 통해 본 방임의 원인

- 법원 판결을 통해 방임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
- 이를 보면 방임의 원인이 몇 가지 도출됨
 - ✓ 지원에 대한 몰이해 (장애인을 인간 이하 또는 동물로 보는 관점, 취약한 존재로 바라봄 등)
 - ✓ 지원자의 게으름 (직무 윤리의 망각)
 - ✓ 도전행동에 대한 타임아웃에 대한 이해 부족 (방임과의 혼동) 등

Ⅳ. 방임의 주체에 대한 쟁점

- “장애인복지법은 방임을 장애인 학대의 유형이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보호자의 정의 규정을 둠으로 인해 장애인을 보호·감독의 객체로 보게 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라는 발제자의 고민에 공감함
- 그럼에도 행위자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규정할 필요는 있음. 그럼에도 구체적 보호·감독의 의무는 상황적 맥락에 의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는 있음
- 이와 관련 발제자가 ‘Ⅴ. 마치며’에서 제시한 “보호·관리 의무의 모든 주체를 열거하기 어렵더라도 일부를 열거하고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여 포섭하는 방식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함
- 이와 더불어 발제자가 우려했듯이, 모든 장애인이 보호·감독의 객체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 장치는 필요함
- 결국 학대 상황에서만 보호·감독의 의무가 해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Ⅴ. 방임의 내용 기준에 대한 쟁점

- 보호·감독 의무의 부실과 방임 사이의 경계를 규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장애(손상)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방임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지, 또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됨
- 모든 상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학대판정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음

- 발제자가 ‘V. 마치며’에서 “방임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사례에서 이미 구체적인 피해가 나타난 장애인학대에 가려 방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이 언급한 맥락과 같음
- 이에 따라 상황적 맥락에서 학대를 판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만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결국 발제자가 제시해 준 보건복지부의 위탁 연구(2021)의 기준 정도가 타당하고, 이를 옹호 기관 직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위 연구의 기초가 되었던 이동석 외(2015)의 방임 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정의	판정지표	대표행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장애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장애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방치한다. - 장애인 스스로 청결유지(예: 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예: 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예: 치매 등)이 있는 장애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장애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장애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예: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생활관련 업무(예: 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예: 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장구(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예: 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장애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장애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장애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장애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VI. 학대 처벌과 관련한 쟁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한 기관은 아님. 처벌을 위한 기관은 경찰이 되어야 함
- 학대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고, 가해자 처벌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님
-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 12월에 장애인학대와 구분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새로 정의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 동조 제4항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위한 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피해자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발제자가 ‘V. 마치며’에서 밝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서 방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더라도 적극적으로 방임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계속 설득하여야 한다.”와 같은 주장에 동의함

「장애인 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한 쟁점」에 대한 토론

황 옥 경 /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 오늘 『장애인 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한 쟁점』에 대한 장범식 변호사님의 발제를 통해서 장애인 방임의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음.

- 그동안 아동학대의 한 유형인 아동방임 연구를 진행해 온 본 토론자는 장애아동 방임에 대한 더욱 각별한 관심과 보호서비스가 실행되어야 할 것임을 확인하였음.

□ 오늘 논의의 주제인 학대의 한 유형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방임’의 범주 논의는 가족 내인가, 수용시설인가, 직장인가에 따라서 다소 다를 것이며, 성인 장애인인가? 아동장애인인가에 따라서도 장애인 방임행위의 범주나 행동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임.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돌봄이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아동에 대한 양육에서 장애 유형에 따른 보호와 돌봄이 더해진 양육이 장애 아동양육의 기본선이 라고 봐야 할 것임.

- 때문에 장애아동의 경우 일반아동에 대한 방임 유형과 더불어, 장애유형에 따른 기본 돌봄을 위협하는 행위나 행동이 장애아동방임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본 토론자는 장범식 변호사님의 제안에 전반적으로 공감함.

□ 오늘 논의는 장애의 연령이나, 장애인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제한 없이 장애인 전반의 방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본 토론자는 그동안 방임의 유형과 판단에 대한 본 토론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방임의 유형과 판단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이것이 장애인 방임 범주의 결정과 판단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함.

I. 방임의 범주에 대하여

□ 방임의 판가름은 까다로움. 특히 관련변인과 환경의 복잡성으로 때문에 복지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조치가 필요한 방임 수준과 사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방임 수준을 판가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임(황옥경, 2008).

- 장변호사님께서도 2021년 11월 제안된 4가지 행위유형, 15가지 행동(/혹은 행위)이 장애인 방임을 판단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계심.

□ 장애인 방임의 경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 더 다양한 장애인의 특성상 방임행위 범주는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할 수 있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지 행위유형(의식주/신변관리, 의료적지원, 교육 등의 기본서비스 제공, 스스로 돌보거나 도움받기를 거부하는 행위) 15가지 행동(/행위)의 범주는 일반아동의 방임범주를 포괄하지도,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생존, 발달, 보호, 참여 등 세계 인권선언 전반의 사항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임.

□ ‘방임의 범주’에 대해 다양한 논란과 주장이 있지만, 최근 황옥경 등(2021)의 연구에서는 아동방임으로 한정되었지만, 아동방임의 행동범주를 ‘물리적 방임’, ‘정서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환경적 방임’의 5가지 행동범주로 보았음.

- ‘물리적 방임’의 하위행동: ‘아동유기’, ‘출생신고 불이행’, ‘양육거부’, ‘위협 방치’, ‘위생 방치’, ‘영양(지원) 방치’
- ‘정서적 방임’의 하위행동: ‘부적절한 양육’, ‘중독과 의존(약물, 알코올, 도박, 게임)’, ‘가정내 학대’, ‘태아기 및 신생아시기 중독(약물, 알코올, 도박, 게임)’
- ‘의료적 방임’의 하위행동: ‘치료거부’, ‘선별적 치료거부’, ‘의료서비스 지연’
- ‘교육적 방임’의 하위행동: ‘무단결석 및 잦은 결석 방치’, ‘교육의무 불이행’, ‘특수교육에 대한 무관심’, ‘인지적 자극에 대한 무관심’
- ‘환경적 방임’의 하위행동: ‘위험한 주거환경 노출’, ‘부적절한 가정환경 노출’, ‘위험한 주변환경 방치’

□ 장애인 방임은 ‘정서학대’와 동일선상에서 발생하기도 함. 정서학대의 행위 유형은 ‘자극 및 상호작용 차단하기’, ‘무시/거부하기’, ‘접주기’, ‘모멸감 주기’, ‘위험상황 노출’, ‘능력이상의 무리한 기대와 강요하기’ 등 6개의 행동유형이 포함됨(황옥경외, 2020).

- ‘자극 및 상호작용차단하기’ 행동유형: 제한, 감금, 발달자극 차단
- ‘무시/거부하기’ 행동유형: ‘기본 욕구 무시’, ‘상호작용거부’, ‘존재거부’, ‘정서적 부재’, ‘비일관된 반응’
- ‘접주기’ 행동유형: 위협, 언어폭력, 유도
- ‘모멸감주기’ 행동유형: ‘수치심주기’, ‘굴욕감주기’, ‘하찮게 여기기’, ‘따돌리기’
- ‘위험상황 노출’ 행동유형: ‘가정폭력 노출’, ‘부적절한 위탁양육’, ‘타락’
- ‘능력이상의 무리한 기대와 강요하기’ 행동유형: ‘성취강요’, ‘비교’, ‘착취’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장애인 방입판단 범주는 행위의 유형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오늘 주로 논의되고 있는 수용시설(환경)에서의 장애인 방입으로 한정하여도 수용시설에서 애정과 관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부, 장애인의 생활 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기록 유무, 중독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여부, 시설환경내 폭력 행위 유무 등이 장애인 방입행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장애인 본인이 각종의 중독에 처할 위험, 선별적 치료거부 여부, 교육등 기회 차단, 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기회나 직업교육의 기회 차단, 인지적 자극 제공 차단, 이와 관련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주거환경이나 시설 환경 노출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II. 학대인가 대 보호서비스 제공 수준인가

□ 장애인 방입에 대하여 사법적 처벌이 필요한 수준인가? 조치등 서비스 개선 요구에 해당하는 수준인가의 판단 어려움이 있음

□ 판단의 준거가 무엇이여야 하는가? 아동방입 판단의 준거는 ‘연령’, ‘행위유형’, ‘행위의 위험성’, ‘결과의 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의도성’, ‘신고전력’ 등을 고려함(황옥경외 2020).

- 전문가들은 ‘결과의 심각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 준거로 인식하고, 그 다음으로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았음. ‘지속성’, ‘반복성’, ‘의도성’ 순을 중요한 판단준거로 인식함.

□ 장애인 방입의 형사 처벌 판단시 위의 판단준거를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물론 각 판단준거의 중요성 순위, 정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 되지만 장애인 방입에서 장소와 연령에 따라 어느 판단기준이 중시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분석과 제안이 필요할 것임,
- 낮은 수준에서 그 위험성이 인식되는 판단의 준거라 할 지라도 어떤 장애인 방입사례에서는 낮은 판단준거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임.
- 각각의 판단 준거 중 어느 준거가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지만, 위험정도에 대한 각 준거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 형사처벌 조치 판단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장애인의 ‘안전’ 일 것임, 장애인이 위험에 빠져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형사처벌의 우선 고려 사항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함. 아동의 경우 부모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거부할 때에도 사법적 절차를 고려할 것을 권고함(황옥경외, 2004).

—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 방임의 위험수준 판단시 참고가 되는 사항

— 확연하게 구분되는 갑작스런 행동

— ‘지금 바로 장애인에게 드러나는 위험’

— ‘시설환경(/ 장애인이 머무는 공간)과 장애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간의 관련성 등

□ 환경의 위기 수준을 예측하는 몇 가지 지표개발도 장애인 방임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시설 위기 수준 예측의 저위험, 보통수준 위험, 고위험 요소를 발굴(안전/ 지역사회 접근성/ 인력의 전문성/ 경제상태/ 주거환경/ 장애인 개인 양육사/ 등)

□ 장애인 방임에 대한 부족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포르파일링이 필요함.

— 방임은 학대 유형 중에서도 판단이 어려운 학대 유형으로 축적된 사례에 기반하여 장애인 방임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장애인 학대 프로파일은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유사한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재학대를 예방할수도 있을 것임.

(참고문헌)

황옥경외(2020).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 마련연구, 국가인권위원회.

황옥경(2008). 아동방임 사정척도 개발 연구, 아동권리연구, 12(3), 249-280.

황옥경(2004). 아동학대 연구의 변화와 과제, 아동권리연구, 8(3), 389-412.

황옥경(2022 b). 유보통합교사의 전문성과 수월성 확보 방안, 유보통합 정책 포럼 4차 유보통합쟁점 토론회 발표자료집.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보는 방임사례

김 지 순 /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2022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방임은 노인학대의 유형을 행태적으로 분류할 경우 방임과 자기방임으로 분류하며, 방임의 정의는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다.

앞서 발제를 해주신 장범식변호사님의 연도별 노인학대 유형 중 방임 사건의 통계에서도 살펴해보았지만, 방임이나 자기방임은 매년 소폭 감소하였다. 또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10,624건 중 자기방임은 1.9%인 총 20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노인의 자기방임이 우리 사회에서 전혀 중요치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최고령층 인구의 증가 현상을 고려해 볼 때 노인의 자기방임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토론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방임 중에서도 자기방임 상황에 놓인 노인을 학대사례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과 자기방임 학대사례 풀어나가기 위한 개인적 의견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I.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자기방임 노인을 사례관리가 어려운 측면

먼저,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자기방임노인에 대한 판정지표가 있지만 자기방임과 노인학대 간의 관계 또한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에서 노인학대 판정지표 중 자기방임의 판정지표는 아래와 같다.

□ 방임-자기방임

판정지표	대표적 행위
<p>1.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유형인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의료 처치를 하는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이처럼 **최소한의, 의도적 비의도적, 위험한 상황**이라는 자기방임의 개념적 모호성과 방대함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자기방임 사례를 판정하고 개입하는데 있어 다양한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가정 내 자기방임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식적, 의도적 유형을 강조한 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무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학대의 방임학대 의 경우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하는 경우(식사 거부 등의 행위로 생명의 위협의 빠진 노인을 방치 한다거나, 의료처치 또는 약물을 거부하여 생명의 위협에 빠질수 있는 노인을 방치)에 대해서는 시설 측에 학대 판정으로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가정 내 방임 노인의 경우 정확한 인지능력으로 판단해서 자기결정원칙에 근거한 행동은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자기선택과 의지에 의한 자기방임은 실제 개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II. 제언

먼저, 장애인의 방임 특히 자기방임 부분이나, 노인의 인권 부분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이 산을 넘을 때 너무 형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지체계 부재에 있는 자기방임 장애인이나 장애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과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자기방에 대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을 모

두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세심하고 밀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 간 단절, 사회지지체계 부재로 인해 사각지대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관계망과 지지체계를 지원하고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이다. 또한 발제에서도 언급한 방임학대에 대한 연구와 사례의 충분한 수집을 통해, 지방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민간 사회복지 기관 및 경찰 등 다학제적 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방임이나 자기방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공유 및 필요한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 실제로 경기도의 5개 노인보호전문기관(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12월 15일 공동포럼에서 건국대 이미지교수님의 「자기방임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이라는 기조강연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노인학대의 경우, 그 변화 특성 중 최근 증가하는 자기방임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커지고, 1인가구가 늘면서 자기방임에 대한 학대 관점에서의 고찰과 개입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도 노인의 변화 특성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방임 예방을 위한 관점에서의 자기방임 정의 및 내용, 판정 기준, 그리고 개입 방법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자기방임은 기존의 타인에 의한 학대와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사례 관리 매뉴얼 개발이 요구된다. 발제에서도 언급한 자기방임의 개념 정교화, 하위 유형 척도 개발(사진 척도 등), 판정 지표 수정, 보완하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모색 되어져야 할 것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김민재 / 프리웰지원주택센터 팀장

I. 들어가며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죄의 의미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장애인학대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형성되는 의존적인 관계, 사회적으로 제한되거나 고립된 환경, 정보접근의 어려움·정보부족 등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이용하여 심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행해지는 학대로부터 장애인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법 제59조의 9에 대표적인 장애인 학대행위를 주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제86조)을 통해 「형법」보다 강화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죄는 해당 「형법」상 범죄에 대한 특별 가중처벌규정인 것이다.
-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뿐만 아니라(제59조의9 제2호, 제86조 제2항 제1호 및 제86조 제3항 제3호),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9조의9 제6호, 제86조 제3항 제3호)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59조의9 제3호, 제86조 제3항 제3호)는 대표적인 장애인 학대행위로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2. 유기 또는 방임죄

- 「장애인복지법」은 제59조의 9 제3호를 통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271조의 유기죄와 특별법적 관계에 있는 규정으로서, 요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므로써 그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경우에 결과

발생과 상관없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유기는 작위 이외에 부작위로도 할 수 있으며 요보호대상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유기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의 성립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많은 만큼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방임행위’ 라고 하여 ‘유기죄’ 와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법률상 · 계약상의무가 인정되는 자들로 부터의 방임 행위

-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 이하 모든 직원 및 지역사회의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령 안에서 법률상 · 계약상 보호의무자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모든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지원행위를 수행함과 아울러 외부의 차별,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지역사회에 보편적인 지원형태 속에서 일반화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고 일상, 관계,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방임, 방조를 일삼고 있는 실태가 여실하다.
- 본 토론자는 2011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9년 3개월 가량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 자립지원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년 9월 상기 시설 운영법인의 주거서비스전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장애인지원주택센터로 이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경험한 장애인거주시설 및 현재의 장애인지원주택에서의 다양한 방임 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II. 거주시설에서의 일상적인 방임 사례

유형1. 서비스 대상에서의 배제

방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성폐렴, 요로감염 등으로 입원을 자주 하고, 한번 입원하면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이용인의 경우 건강 유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시설 축탁의 및 간호사 결정으로 내 · 외부 활동 일절 금지 - 척추측만증이 있거나 구축 또는 신체 변형이 있는 입주민의 경우 일정시간 이상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연계된 재활병원 또는 시설 물리치료사의 결정으로 장시간 외부활동 참여 금지 - 중증장애로 인해 물리, 작업, 언어 등 각종 재활치료 대상에서 제외 - 여름휴가, 여행 등 숙박을 요하거나 여러 교통편을 이용하여 낯선 환경의 적응이 필요한 자폐성 장애 이용인의 경우 참여 대상에서 제외 - 일자리, 교육(학교) 등 정기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회활동 중 지원인력이 동행해야 참여가 가능한 이용인은 무조건 제외. 본인이 스스로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용인만 참여 가능
------	-------------------------------------------------------------------------------------------------------------------------------------------------------------------------------------------------------------------------------------------------------------------------------------------------------------------------------------------------------------------------------------------------------------------------------------------------------------------------------------------------------------------------------------

유형2. 개인생활공간 침해 및 위험 요소 제거의 목적으로 인한 방임

방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에 집착하는 이용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생활공간에 있는 냉장고 모든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냉장고를 없애버림 - 가전 또는 가구 등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습관이 생긴 이용인의 방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물건들을 모두 없애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방에 거주하도록 함 - 연락이 단절 되었다가 십수년만에 다시 만나게 된 자녀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본인의 생활 공간 한켠 벽에 부착하였는데, 해당 공간은 여러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라 초상권 침해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거하도록 함 - 새롭게 장만한 개인 소유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이용인들이 부러워 하고 불필요하게 구입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몰래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함
------	----------------------------------------------------------------------------------------------------------------------------------------------------------------------------------------------------------------------------------------------------------------------------------------------------------------------------------------------------------------------------------------------------------------------------------------------------------------------------------------------

유형3. 분리, 소외, 감금, 억제

방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시간에 사람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며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격리되거나 집단에서 분리 조치 됨. - 식사를 할 때 식당이 아닌 각자의 생활실에서 식사하는데, 벽을 바라보고 먹거나 밥상도 없이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식판을 놓고 앉아서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또한 밥, 국, 반찬을 한 곳에 다 섞어서 먹도록 하거나, 식사 도중 바닥에 흘러 지저분해진 상태의 음식을 다시 먹어도 식사에 관여해 주는 지원인력이 없음. - 스스로 이동하는 이용인 겨울철 욕실탕에 들어가서 탈의하고 대기할 것이 예상됨에도 욕실 창문이 열려 있거나, 타일바닥에 주저 앉아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비위관, 위루관, 장루주머니 등 신체 삽입술을 한 입주민의 경우 해당 부위에 줄을 빼거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긴팔보조기 등으로 팔 억제를 하는데 온 종일 채워 놓고, 심지어는 취침 시에도 보조기를 차고 자게 함 -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용인이 온종일 지역사회를 배회해도 함께 동행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으며, 귀가를 하지 못하면 찾아다니는 것을 반복함 - 생활재활교사들은 이용인의 삶에 있어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오전, 낮, 저녁 시간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앉아서 커피마시고 휴대폰 하는 시간으로 보냄. 이에 중증장애의 이용인은 온종일 침상에 누워만 있거나 엎드려 있는게 전부이며, 하루 중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식사, 약복용, 목욕, 기저귀교체가 전부인 이용인이 대다수임 - 간혹 산책이라는 명분으로 시설 내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는데 이조차도 이용인만 내보내고 지원인력은 다른 업무를 보거나 앉아서 휴식을 취하여 여러 위험에 노출되게 됨
------	-----------------------------------------------------------------------------------------------------------------------------------------------------------------------------------------------------------------------------------------------------------------------------------------------------------------------------------------------------------------------------------------------------------------------------------------------------------------------------------------------------------------------------------------------------------------------------------------------------------------------------------------------------------------------------------------------------------------------------------------------------------------------------------------------------------------------------------------------------------------------------------------------------------------------------------------------------------------------------------------

유형4. 심리정서적 또는 관계적 방임

방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원인력을 아무리 불러도 “네, 잠시만이요” 라는 대답만 들릴 뿐 바로 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같은 층에서 근무를 해도 담당을 나누어 내 담당 이용인이 아니면 부르는 소리를 들어도 가지 않는 직원이 많음. 특히 고령의 와상 이용인분들은 목소리의 힘도 없어서 부르는 소리가 더욱 연약하여 더 자주 더 많이 소외감을 경험하며, 너무 오래 시설에서 살다보니 그러려니 하는데 이럴 때마다 분노 보다는 자존감과 삶의 의욕 등이 하락되어 우울감이 더욱 심해 진다고 표현함.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표현하며, 심지어는 주변에 동료가 사망하면 안타깝고 서글프지만, 한편으로 정말 부럽다고 표현하기도 함. - 중증의 뇌병변장애를 가진 이용인이 특정 직원이 야간근무를 하는 날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식사 시 국도 먹지 않음. 약도 물 없이 씹어서 삼킴. 이유는 근육의 구축과 신체 변형이 심해서 기저귀 교체하는 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무자가 짜증과 눈치를 심하게 주기 때문이었음. 그러나 직접적인 학대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조취를 취할 수도 없고, 이에 해당 이용인은 5일마다 돌아오는 그 날 하룻밤은 오롯이 혼자서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시간임 - 중증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용인이 시설 내부에서 거주시설 근무복 또는 앞치마를 입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면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옷자락을 잡아 끌고 본인의 휠체어로 가서 탑승 후 밀어 달라고 요청함. 또한 시설 근무복이나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철저히 피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이는 그간 시설직원들이 이 이용인의 요구에 대해 얼마나 방임을 했으며, 이로 인해 시설 직원들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얼마나 낮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임.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도와줘야 할 이들에게서 받은 상실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됨.
------	------------------------------------------------------------------------------------------------------------------------------------------------------------------------------------------------------------------------------------------------------------------------------------------------------------------------------------------------------------------------------------------------------------------------------------------------------------------------------------------------------------------------------------------------------------------------------------------------------------------------------------------------------------------------------------------------------------------------------------------------------------------------------------------------------------------------------------------------------------------------------------------------------------------------------------------------------------------------------------------------------------------------------------------

Ⅲ. 프리웰 법인 산하 거주시설에서 최근 쟁점화 하는 방입 이슈

이슈1.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과 어려운행동(도전행동)을 약물을 이용한 제지

방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경·정신과적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이용인이 거주시설에서 탈시설 후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전환 시 주치의로부터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임상 경험상 이렇게 약을 세계 써 본적이 없어서 처방 내리기에 조심스럽다” 라는 말임. - 이에, 때로는 입원을 통해 직접 검사를 진행 후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용량을 조절하여 조금씩 모습을 살피며 추적하기도 함. - 많은 거주시설에서 어려운 행동 또는 우울, 정서적 불안 등을 호소하면 무분별하게 정신과 약을 처방 받게 됨 - 촉탁의 병원 또는 의료협력 병원에서는 환자(이용인)가 내원하지 않아도 생활재활교사 또는 간호사의 의견으로만으로도 약 처방이 쉽게 가능함 - 뇌전증, 발작 등 신경과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이용인 중에서는 뇌파, PET-CT, MRI 등 신경과적 검사나 진단 없이도 약이 처방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이는 뇌병변(뇌성마비) 장애인은 뇌전증이 동반한다는 의료적 기초 지식에 근거하여 일반화해 버리는 오류가 발생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신경정신계 약에는 수면·진정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사람의 생활리듬을 저하시키고, 장기간 복용 시 지속적으로 뇌손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감정 조절, 운동능력, 기억력 등을 나빠지게 만들어 삶의 질이 하향되고 주변인들로 하여금 더욱더 관계를 어렵게 만들게 됨.
------	--------------------------------------------------------------------------------------------------------------------------------------------------------------------------------------------------------------------------------------------------------------------------------------------------------------------------------------------------------------------------------------------------------------------------------------------------------------------------------------------------------------------------------------------------------------------------------------------------------------------------------------------------------------------------------------------------------------------------------------------------------------------------------------

이슈2. 이용인 배뇨·배변 관리의 수월함을 위해 기저귀 착용 후 방입 사례

방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소규모화로 인해 지원 인력의 감소 -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행이 가능하여 조금의 도움만으로도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이용인에게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기저귀 착용으로 인해 자존감 및 삶의 질 현저히 저하 - 역설적으로 당사자는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실수해도 혼나지 않기 때문에 기저귀 착용을 선호하게 되는 역현상 발생 - 한번 기저귀를 착용한 이용인의 경우 남은 여생을 기저귀 착용하며 살아 가게 됨 - 관리의 수월함을 위해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문제는 중대한 방입이라 할 수 있음
------	------------------------------------------------------------------------------------------------------------------------------------------------------------------------------------------------------------------------------------------------------------------------------------------------------------------------------------------------------------------------------------------------

이슈3. 의료기관에서의 성급한 진단으로 인한 방임 사례

방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많은 사유들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됨. 이 중 급성신부전증 또는 장폐색 등과 같이 어느 장기의 기능이 갑작스럽게 상실되어 구토, 경련, 고혈압 등이 발생하여 응급하게 병원을 찾게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사례로 입원한 이용인 중 입원 전에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식사도 잘 하였으나 급성으로 인해 섭식 및 소화 기능을 상실하여 비위관, 위루관 등을 삽입하여 구강 섭취를 더이상 못하게 되거나 카테터 등을 삽입하여 배뇨를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음 - 거주시설에서는 통상적으로 지역 내 종합병원급의 큰 병원과 의료협력관계를 맺고 촉탁의를 선임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이로 인해 해당 병원에 대부분의 이용인이 이용하고 그 병원에서 결정한 사항이 그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함. - 그러나 의료기관들마다 검사, 진단, 처치 과정 등이 매우 상이하며, 과연 그 의료기관들이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의미를 생각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최종 진단을 내리는지 의구심이 있음 - 누군가는 이 한번의 결정으로 인해 평생 음식 맛을 입으로 볼 수 없게 되고, 소변줄을 차고 의료용 침상에 누워서 와상의 상태로 생활하게 됨
------	---------------------------------------------------------------------------------------------------------------------------------------------------------------------------------------------------------------------------------------------------------------------------------------------------------------------------------------------------------------------------------------------------------------------------------------------------------------------------------------------------------------------------------------------------------------------------------------------------------------------------------------------------------------------------------------------------------------

IV. 지원주택에서의 방임 사례 및 대응과정의 어려움

1. 사례

- 중증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입주민의 신체 부위에서 심각한 상처 발생
- 주말 활동지원사가 상처 발견 후 지원주택에 공유하여 치료 후 신고, 조사 착수
- 주중 활동지원사들은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 시도 정황 포착
- 이에, 직접 가해자 색출 및 방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식 조사 및 수사 진행

2. 대응과정 및 어려움

대응과정	관련기관	지원내용	문제점
자체조사	- 지원주택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후견인에게 사건 알림 - 사건 직접 관련자 경위 확인 - 외부조사단 구성 - 권익옹호기관, 112 신고 - 피해 입주민 지원 대책 수립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인력의 인권감수성 - 자체적으로 외부조사단 구성 시 참여구성단(원)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 중증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심리 정서적 상태 진단 및 이후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의 어려움(사례 및 정보 부족 등) - 학대 피해 입주민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조사기관 신고	- 권익옹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회차 전화상담을 통해 조사 요청 - 3회차 공문을 통해 조사 요청 - 증거가 없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어려움 있음을 통보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 선정 기준(증거 등)에 부합되면 담당자 선에서 정리되어 조사 진행의 어려움 - 논의 사례로 상정 되더라도 고발 건이 아니면 지원 사례로 선정 되기 어려움 - 업무의 과부하 등으로 인해 역할을 수사기관으로 전가하려는 태도 - 코로나 등 여러 사회환경적 문제로 인해 조사 시기의 지연 - 야간, 주말, 공휴일 등 신고·상담 전화 연락안됨 - 피해자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 및 내용의 부재
외부조사단 구성	- 장애인권익옹호인권·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택 스텝 및 활동지원사 등 해당 사건 관련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경위 조사 - 주요 원인 및 문제점 확인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및 향후 지원 방향성 제시 - 학대 피해 이용인의 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 회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구성원 필요 - 구성단(원)의 전문성 및 적절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 - 조사권한 부여의 어려움 - 피조사자들의 소극적 태도 및 긴장도 저하(위증 등의 행위를 다수 목격)
수사기관 신고	- 112 - 관할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신고 -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 관련 증거 제출 - 사건조사 참석 - 장추련 등 권익옹호를 위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신고 신고 시, 사건이 가까운 지구대로 인계되지만, 학대 사건에 대한 기본지식 또는 이해 정도가 매우 낮음 - 112신고 절차 후 별도로 관할 경찰서로 사건 접수해야하는 번거로움 있음 - 관할경찰서 담당 부서의 모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 - 사건 성립을 위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 - 담당부서 및 담당 수사관의 관심도에 따라 사건의 수사 내용 및 사건 성립 가능 여부가 결정됨 -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피해자 처벌 및 사건 수사에 대한 동의의 어려움 (후견인이 있더라도 특정후견인의 경우 후견사무 중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뭄) - 직접적인 가해의 증거가 없으면 학대, 방조 등을 단독 범죄로 인정받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음. 해당 사건 역시 신체적 가해를 주사건으로 다루고 방임, 방조에 대한 수사를 별건수사로 진행하였음
--	--	--	-------------------------------------------------------------------------------------------------------------------------------------------------------------------------------------------------------------------------------------------------------------------------------------------------------------------------------------------------------------------------------------------------

V. 마치며

방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거나 혹은 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곁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떤 소속이나 관계에서 ‘배제’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배제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또한 배제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장애 당사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삶이 아니라 특별한 주거형태인 거주시설에서 살아 가고 있으며, 이는 이미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자체가 이미 사회적 방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발제문에서 거론되었던 바와 같이 방임은 명백한 학대 범죄이며, 그 어떤 학대 유형보다도 죄질이 나쁘고 가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폭력, 성적행위, 경제적 착취 등 직접적인 학대에 비해 형사적 처벌을 인정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장애인학대를 주관하는 관련 부처, 각종 조사·수사기관, 그리고 장애 당사자를 지원하는 많은 관련자들이 보다 더 방임에 대해서 심도 있고 섬세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보고

보고자료 1

2022년 경기북부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 경기북부 10개 시·군엔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 문제 발생시 대처가 모두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는 단 한곳도 없다!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미설치 76.2%
-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곳 60.5%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높낮이 조절이 불가능한 키오스크 99%
-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장치는 경기북부 어느 곳에도 없다! (설치율 0%)

I.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가파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 전환 및 적응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의 비대면화, 온택트(Ontact)경제 등장, 고용시장의 지각변동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모든것들은 ‘디지털화’라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다.

○ 이러한 변화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는 공공·민간 등 모든 분야에 가장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 하지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미흡으로 사용이 어렵다거나, 기기가 적절치 않은 높이와 위치에 설치가 되어 휠체어사용자는 접근할 수 없기도 하고, 인적지원이 되지 않아 키오스크 오작동에 대처가 안되는 등 장애인, 고령층 등 기기 사용의 접근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국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내 관련 조항이 신설하여 개정¹⁾되었다.

○ 그러나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들의 부담을 이유로 관련 법 시행령에서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차별상황 때문에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며, 장애인의 차별을 계속 가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에 본 기관에서는 개정 된 관련법률의 시행(2023년 1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022년에 발표된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이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²⁾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조사 목적

-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 및 이용 시, 편의제공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행 준수를 위한 사전 법규정 안내 및 가이드 제시
- 지역사회 장애인이 편안하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③ 재화·용역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2)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이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2,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II. 문제인식 (도입)

[“일상화된 키오스크, 시각장애인에겐 차별” .. 인권위에 진정]

(발췌 : 연합뉴스 2021.10.14.)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이용 빈도가 늘어난 무인발권기(키오스크)가 장애인들에겐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에겐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이며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이들은 키오스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재화·용역의 제공과 정보접근권 등에서 비장애인과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중략 -

“주변인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달라는 기본적 요구에 인권위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정서와 소장을 각각 인권위와 법원에 제출했다.

[장애인 키오스크 접근 보장 ‘찬밥’ 우려]

(발췌 : 에이블뉴스 2022.06.13.)

내년 1월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가 또다시 ‘찬밥’ 우려를 표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준비중인 보건복지부가 단계적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단계적 적용은 장애인에게 폭력” “또다시 100년을 기다려야 한다” 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복지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 중략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는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 되면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재화·용역에서 배제와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휠체어 이용자는 화면의 높이가 맞지 않고, 시각장애인은 점자·음성안내가 제공되지 않으며, 모바일 화면의 어려운 용어나 빠른 화면 넘김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2020년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해 본회의 통과후 내년 1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 중략 -

이 같은 장애계 우려에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시행령을 통해 세부적인 무인정보단말기 유형, 종류,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면서 “공청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언급했다.

[‘키오스크’ 주문에 난감한 시각장애인.. “음성·점자 없는 유리장벽”]

(발췌 : MBN 2022.07.12.)

시각장애인들이 서울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직접 무인주문기(키오스크)로 주문을 해보는 캠페인을 벌이며 키오스크가 얼마나 시각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지 고발했습니다.

- 중략 -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무인주문기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이 ‘3년 내 단계적 허용’ 방침을 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됐음에도 내년 1월에야 시행되는데, 여기에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설정하면 2026년까지 3년 반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유리장벽과 같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메뉴고르기 와 결제, 포인트 적립 등 복잡한 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신용카드 투입구도 찾지 못해 총체 적으로 접근이 어렵다”며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더불어 “시행령안은 정 당한 편의 제공의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에 더 접근 하기 좋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시행령의 좁은 해석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이하 생략 -

[“모든 장애인 접근 가능한 키오스크, 1002대 중 1대뿐”]

(발췌 : 헤럴드경제 2022.09.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보편화 되고 있지만, 장애인 접근성이 모두 보장되는 키오스크는 0.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 무인정보 단말기 접근 이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통해 전국 26개 업종에서 사용 중인 키오스크 1002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 중략 -

보고서는 “모니터링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1002개 중 접근이 모두 가능한 기기는 단 1 대 뿐이었다”며 “결국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사용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상 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1002개 중 100개가 무인 사업장으로 인력 배치 없이 기기만으로 운영됐다”며 “인적 지원이 전혀 없는 무인 시스템의 확산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에 큰 제약이 될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 이하 생략 -

Ⅲ.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실태조사 조사원 사전교육

- 일 시 : 2022년 10월 05일 (수) 10:00 ~ 12:00
- 장 소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실
- 참여자 : 조사원 8명
 <조사원 선정기준 : 실태조사 유경험자이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
- 교육내용: 장애인관련법,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안내, 체크리스트 작성법 등
- 교육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김성연
- 사진



Ⅳ. 조사 방법

1.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 항목

이번 조사는 경기북부 10개 시·군내에서 지역당 20개 사업장(총 200대)을 선정, 2021년 07월 개정 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의 2023년 01월 시행에 앞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05일 ~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물리적 접근(휠체어사용자 기기 접근, 시각장애인 기기 접근, 위치확인의 용이성 및 위치 확인 방법 등)과 기기조작(휠체어사용자 조작 가능여부,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기기 조작 환경, 발달장애인 등 등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기기조작 환경 등), 기타사용 편의제공(오작동시 불편처리 대처방식, 인적지원 가능 여부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기기당 13개의 세부 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표 1-1> 경기북부 10개 시·군 조사대상 (지역별)

구분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합계
조사대상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0

<표 1-2> 경기북부 10개 시·군 조사대상 (업종별)

구분	업종	조사대상
공공영역	공공시설	7
	대중교통	7
	도서관	4
	복지관	2
소 계		20
민간생활영역	은행	27
	병원	6
소 계		33
생활편의업체	카페	31
	음식점	32
	영화관	9
	프랜차이즈	25
	판매점	3
	마트	10
	PC방	2
소 계		112
무인시스템 업체	무인사진관	5
	무인보관함	2
	무인독서실	4
	무인판매점	17
	무인세탁소	4
	무인노래방	3
소 계		35
합 계		200

2. 조사 방법

본 실태조사의 조사 방법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였고, 각 사업장에 실태조사의 목적을 밝히고 조사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조사원은 현장교육을 이수한 후 조사원 명찰을 패용하고 조사현장에 투입되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200대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조사하였고, 200대 모두 조사가 완료 되었다.

V. 편의시설 및 이용 실태조사 결과

1.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 환경 관련 문항

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위치

문 항		응 답	비율(%)
무인정보단말기는 매장 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출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곳	186	93.0
	출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매장 안쪽	14	7.0
합 계		200	100

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

문 항		응 답	비율(%)
휠체어 사용자가 키오스크 까지 쉽게 갈 수 있나요?	예	184	92.0
	아니오	16	8.0
합 계		200	100

다. 시각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

문 항		응 답	비율(%)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모두 표시해 주세요	점자유도블럭 (최소한 기계 앞에 점형블럭이 있어야 함)	16	7.6
	음성신호	34	16.2
	없다	160	76.2
합 계		210	100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단말기 작동을 위해 기기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지, 기기의 매장 내 위치와 기기 앞 까지의 접근 과정에 장애물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 되었다. 조사대상 전체의 7% 정도는 기기가 출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매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기기의 설치 위치와는 상관없이 16개로 나타났다.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공간이 협소하여 이동하기에 어렵다.’, ‘키오스크 앞에 상품진열대가 있다.’ 등이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점자유도블럭이 7.6%, 음성 신호가 16.2%로 나타났으며, 이외 76.2%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기기 조작 관련 문항

가.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여부

문 항	응 답	비율(%)
키오스크 아래쪽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나요?	예	84 42.0
	아니오	116 58.0
합 계	200	100

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높낮이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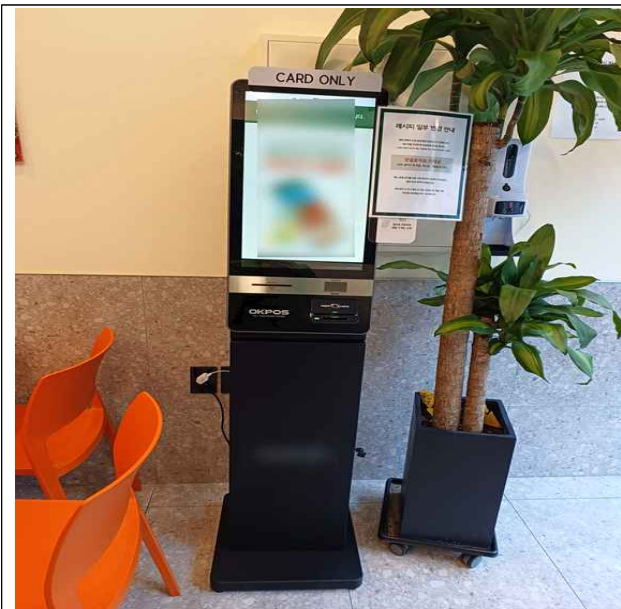
문 항	응 답	비율(%)
휠체어사용자를 위해서 기계가 내려오거나 화면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기능이 하나라도 있나요?	예	2 1.0
	아니오	198 99.0
합 계	200	100

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편의시설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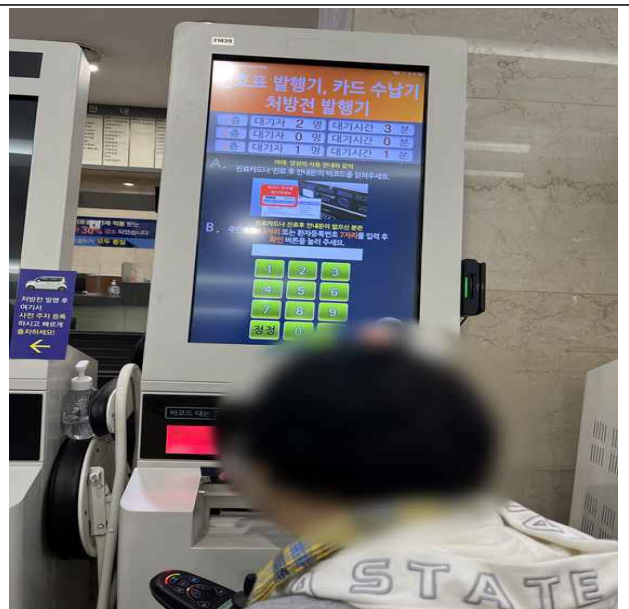
문항	응답	비율(%)	
		전체(중복) 응답(434)	조사대수 기준(200)
휠체어사용자를 위해서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기준(120cm 이내)에 맞게 높이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중복체크)	터치화면의 상단메뉴 위치	50	11.5
	카드 및 현금 투입구 위치	141	32.5
	영수증 및 티켓 발행구 위치	148	34.1
	조작버튼 위치	63	14.5
	적절높이없음	32	7.4
합계	434	100	217.0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기기 조작 시 장애인 편의에 관한 질문이다. 전체 조사대상 기기 중 58.0%가 기기 하단에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기기 자체의 높낮이 또는 기기화면의 높낮이가 조절 가능한 기기는 전체의 1.0%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조작이 필요한 부분들의 높이도 카드 및 현금을 투입하는 투입구와 영수증이나 티켓이 발행되어 나오는 발행구 등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약 70% 이상은 손이 닿기 어려운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기기 자체가 아예 손이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설치된 것이 32대가 있었다.



하단 지지대 및 테이블 설치 등의 이유로 인해 휠체어 접근 공간이 확보 되지 않는 키오스크



하단 돌출 일체형으로 휠체어 접근 후, 터치패드 사용이 불가능한 키오스크

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작동 형태

문 항		응 답	비율(%)
키오스크 기기의 작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터치방식 입력형태	164	82.0
	누르는 버튼 입력형태	3	1.5
	터치방식과 누르는 버튼 모두 사용	33	16.5
합 계		200	100

마. 시각장애인 편의제공

문 항	응 답	비율(%)	
		전체(중복) 응답(300)	조사대수 기준(200)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제공되어 있는 편의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중복체크)	화면내용의 음성 동시제공	68	22.7
	음성 이어폰 단자	28	9.3
	조작판 점자표시	28	9.3
	카드 및 지폐투입구 등 점자표시	29	9.7
	저시력장애인을 위한 기기의 화면확대	26	8.7
	시각편의없음	121	40.3
합 계		300	150.0

바.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문 항		응 답	비율(%)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화면에 수어가 제공되고 있나요?	예	0	0.0
	아니오	200	100.0
합 계		200	100

전체 조사 대상 기기의 82.0%가 터치방식만의 입력형태를 가지고 있는 터치스크린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터치스크린 사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편의 장치가 아예 없는 기기가 121대나 되었다.

결국, 전체 조사 기기 200대 중 절반 이상인 60.5%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 중에 시각장애인의 편의장치가 확인되었던 기기는 은행ATM기, 대중교통 수단이 용을 위한 무인티켓발급기, 공공기관의 민원처리기 등으로서, 민간영역의 무인정보단말기에서는 해당 편의장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편의장치로 수어가 제공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 민간 통틀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저시력고객용
화면확대 버튼,
시각장애인전용키패드



점자디스플레이,
시각장애인전용키패드,
이어폰 단자,
큰글씨보기,
휠체어사용자보기

사. 사용 안내 방식

문 항		응 답	비율(%)
메뉴 등의 설명은 어떻게 제공되고 있나요?	글자로만	115	57.5
	글자, 그림(사진)이 함께	85	42.5
	그림만	0	0.0
합 계		200	100

아. 사용 방법 설명

문 항		응 답	비율(%)
키오스크 사용방법이 별도로 설명되어 있나요?	안내판에 글자로만	50	25.0
	안내판에 그림/도표까지	26	13.0
	별도 안내 없음	124	62.0
합 계		200	100

정보 접근 취약계층과 같은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의 사용 자체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안내 방식과 사용방법 설명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62.0%가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었다.

사용방법 안내가 되고 있는 경우에도 13.0% 정도는 그림과 도표 등 글자와 함께 제공되고 있지만, 25.0%는 오로지 글자로만 안내를 하고 있어서 노약자나 발달장애인 등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해당 기기 이용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p>글자로만 구성 되어 있는 안내판</p>	<p>그림/도표가 함께 구성 되어 있는 안내판</p>	

3.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시 기타 편의제공 관련 문항

가. 기기 작동오류에 대한 대처 방법

문항		응답	비율(%)	
			전체(중복) 응답(206)	조사대수 기준(200)
기기가 작동이 안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중복체크)	전화번호만 안내되어 있음	38	18.4	19.0
	문자가 가능한 전화번호가 함께 안내되어 있음	4	1.9	2.0
	수화기를 들면 바로 음성으로 연결되는 형태	20	9.7	10.0
	연락방법 자체가 없음	46	22.3	23.0
	기타	98	47.7	49.0
합계		206	100	103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는 인적지원을 기기가 대신하게 되는 것으로서 오류 및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쌍방향 소통을 통해 즉시 문제해결이 불가능 하기에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전체 조사 기기 중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만 안내 되어있는 경우는 19.0% 이며, 문자가 가능한 전화번호가 함께 안내 되어있는 경우는 2.0%, 수화기가 설치 되어있어 음성으로 연결되는 형태는 10.0%로 나타났다.

이 외 기타응답으로 상주하고 있는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경우로서 49.0%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화면이나 버튼의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호출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며, 심지어 호출을 진행하여도 직원의 응답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조사 기기 중 23.0%는 위와 같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방법 안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응답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보급되어 있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작동오류에 대한 대처방법이 음성, 문자, 직원호출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으로 제공되는 문의와 대처방법에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4.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기기 형태 관련 문항

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기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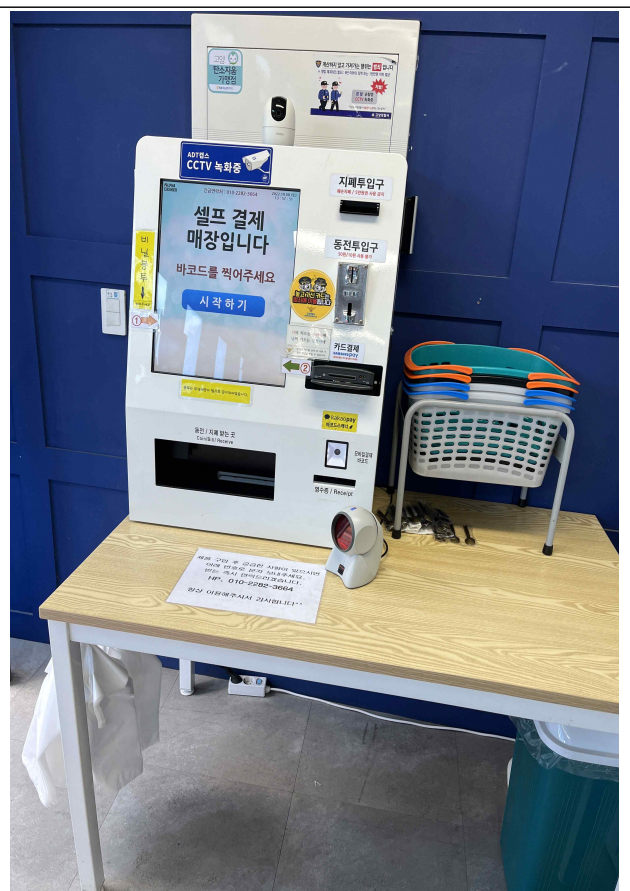
문항		응답	비율(%)
키오스크 기기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터치스크린과 지지대가 연결된 일체형	141	70.5
	터치스크린과 지지대가 분리된 분리형	59	29.5
합계		200	100

현재, 보급되어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는 지지대와 스크린이 하나로 붙어있는 일체형과 지지대가 스크린과 분리될수 있거나 지지대가 없는 분리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체형의 경우 전체적으로 높이가 높고, 아래쪽에 여유공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휠체어 이용자는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기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러한 일체형인 경우가 대부분인 70.5%이고, 분리형인 경우가 29.5%로 확인 되었다.



터치스크린과 지지대가 연결된 일체형



터치스크린과 지지대가 분리된 분리형

5. 결과분석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는 기본적으로 정보제공과 그 정보를 기반으로 조작을 유인하여 작동하는 기기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본 원칙은 장애 유형에 맞는 각각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및 촉각 정보를, 청각 장애인에게는 문자 및 수어정보를, 저시력장애인에게는 화면 확대 및 고대비로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신체적인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기의 설치나 형태, 작동 방법 등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실태조사 전체 조사 대상 중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 문제 발생시의 대처 모두 가능한 기기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가장 큰 이유는 공공기관 또는 금융 관련 기기 외에는 터치스크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음성 지원이 가능하거나 촉각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기가 없으며,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를 제공하는 기기는 단 한곳도 없기 때문이다. 즉, 시각적인 정보 이외에 음성과 촉각정보를 제공하고, 수어와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이번 조사대상 200대 중 17.5%(35대)가 인력의 지원이 없는 무인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무인 사업장은 현재, 고용 및 경제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조사와 같이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에 대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속에서의 제약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Ⅵ. 실태조사 모니터링의 문제점 및 한계

이번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실태조사는 관련 규제 법령에 의한 구체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던 것이 아닌 조사원이 해당 기기를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중심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주관적인 조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접근과 이용에 대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기기에 접근이 가능한 곳만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기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매장 진입 불가, 기기 앞 적치물로 인해 접근 불가 등의 이유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곳들이 많아 아쉬움이 남았다.

VII. 문제점과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제한·배제·분리·거부’를 포괄적인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비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하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번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의한 시행령을 단계적 적용으로 판단한 것은 오로지 사업주의 입장에서만 고려되어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며,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당사자에게 차별을 조금 더 견뎌내라는 의미밖에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에 나와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가지 내용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한 삶과 그 기본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장애인의 기본권 및 인권문제로 나타나게 되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 법률을 통하여 보장 장치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생기는 것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배리어프리로 개발된 무인정보단말기가 현재 보급되고 있는 기기보다 고가로 만들어 지고 있어,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시대변화의 발맞춤과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사업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여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회적가치도 함께 갖추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반 되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국민 모두가 만족하고 같이 행복을 추구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보고자료 2

2022년 상담 현황 보고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I. 2022년 상담분석 개요

1. 법적근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 등)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피해자지원, 사후관리 등 장애인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및 그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 목 적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상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3. 기 간

2022.01.01. ~ 2022.09.30.

4. 대 상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상담.

5. 세부분석

[신고접수]

(단위: 건, %)

학대		차별		일반상담		계	
183	59	27	9	99	32	309	100

2022년 9월말 기준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접수는 총 309건으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183건으로 59%, 일반상담이 99건으로 32%를 차지하였으며 차별과 관련된 상담이 27건으로 9%를 차지하였다.

2021년 9월말 기준 294건 접수된 사례와 비교하면 2022년 9월말 기준 접수 사례는 309건으로 작년 대비 5.1% 증가된 것을 확인할수 있다.

학대사례는 2021년 9월말 기준 169건, 2022년 9월말 기준 183건으로 작년 대비 8.3% 증가, 일반상담은 2021년 9월말 기준 115건, 2022년 9월말 기준 99건으로 작년 대비 13.9% 감소하였고 차별 상담은 2021년 9월말 기준 10건, 2022년 9월말 기준 27건으로 작년 대비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분	건	계
연천	12	3.9
동두천	17	5.5
양주	32	10.4
포천	19	6.1
의정부	48	15.4
남양주	28	9.1
파주	37	12.0
고양	46	14.9
구리	25	8.1
가평	16	5.2
기타	29	9.4
계	309	100

2022년 9월말 기준 상담 접수된 지역을 살펴보면 의정부 48건, 고양 46건, 파주 37건 순으로 상담이 많이 접수되었다. 기타의 경우 일반상담으로 당사자가 지역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거나 그 외 지역에 해당된다.

상담 접수가 많이 된 지역의 원인은 관련 기관 업무 협약과 지속적인 기관 홍보 등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상담 접수가 저조한 지역은 더욱 활발한 기관 홍보 및 업무 협약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 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파악안됨		계	
170	55	131	42	8	3	309	100

2022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9월말 접수된 상담 309건 중 남성은 55%(170명), 여성은 42%(13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3% 높게 나타났다. 파악안됨의 경우 일반 상담으로 단순 정보제공이나,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연 령 대]

(단위: 명,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기타	계
54	63	30	49	51	28	2	2	30	309
17.5	20.4	9.7	15.9	16.5	9.1	0.6	0.6	9.7	100

상담 접수 연령대는 20대가 20.4%(6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대 17.5%(54명), 50대 16.5%(51명), 40대 15.9%(49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말 기준 294건 접수된 사례와 비교할 때, 눈여겨봐야 할 점은 10대 아동의 수가 10.7%(32명)에서 17.5%(54명)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장애유형별]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34	11.1
뇌병변장애	21	6.8
시각장애	9	2.9
청각장애	6	1.9
언어장애	1	0.3
지적장애	171	55.3
자폐성장애	15	4.9
정신장애	13	4.2
신장장애	0	0
심장장애	1	0.3
호흡기장애	0	0
간장애	0	0
안면장애	0	0
장루·요루장애	0	0
뇌전증장애	0	0
미등록	38	12.3
계	309	100

※중복 장애 미포함

장애 유형별 상담 접수는 지적장애가 55.3%(171건)로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 12.3%(38건), 다음으로 지체장애가 11.1%(34건), 뇌병변장애가 6.8%(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의 수는 매년 상담 접수되는 장애유형 중 압도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에 대한 인지 능력과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가해자를 오히려 돌봐주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 수사기관 또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도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학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신고접수 방법]

(단위: 건, %)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내방	기타 (인지포함)	계
206	37	1	19	0	11	35	309
66.7	12.0	0.3	6.1	0	3.6	11.3	100

신고는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고, 장애인학대 정보시스템 문자신고, 팩스·우편을 통한 신고,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내방신고 및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인지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다.

접수 방법은 전화 신고가 66.7%(2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12%(37건) 다음으로 기타 11.3%(35건), 팩스 6.1%(19건), 내방 3.6%(11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말 기준 294건과 비교하였을 때, 온라인 신고접수가 4%(12건)에서 12%(37건)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신고	인지	연계	이관	경찰통보	계
222	38	5	2	42	309
71.8	12.3	1.6	0.7	13.6	100

접수 경로는 신고가 71.8%(222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외 경찰통보가 13.6%(42건)을 차지하였으며 인지를 통한 신고 접수가 12.3%(38건)을 차지하였다.

경찰통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5월 약 한 달간 경기북부 지역 간 시·군의 경찰서 13곳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관홍보 및 사건통보절차 등을 안내하며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현장 조사 및 실시율 현황]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학대 조사	학대 조사 실시율	학대 조사 횟수	사례별 조사 횟수
183	177	96.7	329	1.8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을 담당하는 권리옹호팀 6명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학대 조사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대의심사례 183건 중 177건의 학대 조사를 실시하여 96.7%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전체 학대 조사 횟수는 329건으로 사례별 1.8건의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조사는 피해자,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상담조사 방법으로는 방문, 내방, 전화, 기타로 진행되며 상담 조사 시 조사 대상자의 연락 불가, 의사소통 불가, 사망, 수감, 조사거부, 경찰 수사 중, 타 기관 조사 중, 부재중으로 조사가 불가되는 경우도 있다.

학대의심사례 조사 시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응급조치는 피해장애인 쉼터 등으로 연계하거나 의료기관 인도를 통해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학대신고 사례판정]

(단위: 건, %)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조사 중		계	
74	40.4	60	32.8	18	9.9	31	16.9	183	100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례판정 절차를 통해 판단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회의에서 장애인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로 판정하며, 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학대 판정위원회를 거쳐 학대여부를 판정한다.

장애인학대사례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비학대사례이지만 향후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비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로 구분한다.

2022년 9월말 학대의심신고 183건중 74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되었으며 비학대사례가 60건, 잠재위험사례가 18건,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31건으로 나타났다.

[사례판정 학대유형]

(단위: 건(명), %)

학대유형	상담건(명)	비율(%)
신체적학대	16	14.8
정서적학대	37	34.3
성적학대	7	6.5
경제적착취 (노동력착취 포함)	27	25
유기	0	0
방임	21	19.4
계	108	100

※ 중복학대 포함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중 정서적학대가 34.3%(3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착취(노동력착취 포함) 25%(27건), 방임 19.4%(21건), 신체적학대 14.8%(16건), 성적학대 6.5%(7건) 순으로 판정이 되었다.

2021년 9월말 기준 학대의심 신고 169건에 대해선 경제적착취가 40.2%(35건) 가장 높았고, 방임 30%(26건), 정서적학대 19.5%(17건), 신체적학대 8%(7건), 성적학대 2.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할 때 학대유형 중 정서, 신체적, 성적 학대는 증가했지만, 경제적착취와 방임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착취의 주요 사례로 경제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핸드폰을 개통 및 소액결제를 강요하여 범죄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건은 범죄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간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경제적착취 사건은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임에도 행위자들의 교묘한 수법을 통해 수사망을 빠져나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적학대의 주요 사례로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행위자에 의해 미성년 아동이 성적 학대의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성범죄에 대한 인지 능력과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또는 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겨 장애인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방임 사례의 경우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방임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이용인을 대상으로 냉·난방 시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든가, 이용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등, 야간 근무자가 부재한 상황 등의 이유가 있다.

[피해자지원유형]

(단위: 건,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상담	중재	기타	계
71	43	78	399	266	940	6	25	1,828
3.9	2.3	4.3	21.8	14.6	51.4	0.3	1.4	100

2022년 9월 말 접수 기준 상담 및 지원은 총 1,828회의 피해자지원이 진행되었다.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기타 등의 영역으로 나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한 사례에 여러 가지의 피해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총 1,828의 지원 건수 중 상담을 제외하고 사법지원이 21.8%(39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지원 14.6%(266건), 거주지원 4.3%(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지원은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통원치료나 검진 등을 말한다. **심리지원**은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진단,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지원**은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지원으로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신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법지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및 사법절차, 법률상담이 해당된다. **복지지원**은 장애인등록,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자원 연계를 말한다. 그 외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 간 중재, 교육연계, 진정, 행정처분 요구,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상담 등을 말한다.

[일반사례 신고접수]

(단위: 건, %)

차별											일반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 수단	정보 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	참정권	기타	정보문의	불만/민원	기타	계
5	0	2	2	2	4	0	1	11	0	0	68	5	26	126
4.0	0	1.6	1.6	1.6	3.2	0	0.8	8.7	0	0	54.0	4.0	20.5	100

일반상담 및 차별상담의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사례는 정보문의 사례가 54%(6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차별에서는 사법/행정 사례가 8.7%(1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별 상담 같은 경우 본 기관에서 상담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진정 접수 등을 활용하고 있다.

당신의 관심! 한 통의 전화!
변화하는 장애인의 삶

장애인차별상담 및 학대신고

1644-8295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Gyeonggibukbu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가평 · 고양 · 구리 · 남양주 · 동두천 · 양주 · 연천 · 의정부 · 파주 · 포천

11813)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
전화 031-851-1007 / 팩스 031-851-1008 / 메일 ggndrc@gmail.com / 홈페이지 www.ggnaapd.or.kr